

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_별지

2025. 12

다이렉트업무용자동차보험

1. 보험의 종류 : 자동차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다이렉트업무용자동차보험

3. 보험 가입대상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 4종화물, 경화물 자동차

4.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다.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5.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가. 통신판매를 통한 직접 판매(TM)

6.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 : 1년만기

나. 보험료납입주기 : 일시납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 특약에 관한 사항

보통약관에 첨부할 특약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운전자담보 특별약관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사고부대비용담보 특별약관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	신차가액보상 담보(6개월) 특별약관
신차가액보상 확장 담보(12개월) 특별약관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별금비용(스쿨존확대형) 특별약관	형사합의금 특별약관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 특별약관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실속형 추가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 실속형 추가 특별약관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 실속형 추가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실속형 추가 특별약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전차량 일괄계약에 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지정정비업체 입고우대 특별약관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추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상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물류 운송 시간제보험 특별약관	자동비상 제동장치(AEB) 할인 특별약관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10. 기타 사항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각 사항의 경우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1)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개별할인·할증의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2) 단체할인·할증 적용 대상 계약 중

①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서로 다른 보험료 적용기간에 걸치는 단기계약

② 동일보험료 적용기간 말일까지의 보험기간으로 하는 단기계약

③ 기존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낮은 적용률로 체결하는 계약

라.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관련 제출서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보험의 인수심사, 보험금 심사 혹은 요율산출 등 다른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는다.